

순천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정 1982. 12. 20.	개정 1985. 1. 1.
개정 1985. 12. 19.	개정 1986. 6. 17.
개정 1988. 8. 16.	개정 1990. 6. 5.
개정 1991. 8. 1.	개정 1992. 3. 25.
개정 1992. 9. 24.	개정 1994. 9. 29.
개정 1996. 9. 5.	개정 1997. 7. 14.
개정 1998. 3. 18.	개정 1998. 11. 20.
개정 1999. 12. 17.	개정 2000. 9. 18.
개정 2002. 2. 28.	개정 2002. 10. 16.
개정 2002. 12. 31.	전문개정 2004. 6. 18.
개정 2005. 1. 27.	개정 2005. 3. 16.
개정 2005. 10. 18.	개정 2006. 4. 24.
개정 2007. 6. 26.	개정 2007. 12. 31.
개정 2009. 11. 9.	개정 2012. 1. 26.
개정 2012. 7. 12.	개정 2012. 10. 25.
개정 2013. 2. 15.	개정 2013. 3. 1.
개정 2013. 5. 31.	개정 2014. 2. 11.
개정 2014. 4. 29.	개정 2014. 12. 24.
개정 2016. 5. 4.	개정 2017. 2. 20.
개정 2018. 3. 13.	개정 2018. 3. 30.
개정 2019. 11. 12.	개정 2019. 12. 19.
개정 2020. 2.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관리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원인사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대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재임용·재계약·승진임용·상위직급임용계약·정년보장임용·검보직 등에 있어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교원이라 함은 이 대학교의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원”이라 한다)를 말하며, 임용이라 함은 그 종류를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재임용·재계약·승진임용·상위직급임용계약·정년보장임용을 통칭한다.(개정 2012.7.12.)

제2장 임용기간·연구실적물 등

제4조(임용기간 등) ①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이하 “재직중인교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정년보장 교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 (개정 2007.12.31., 2012.10.25.)
2. 교수 : 10년 (개정 2007.12.31.)
3. 부교수 : 7년
4. 조교수 : 4년
5. (삭제 2012.7.12.)

② 2002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되는 교원(이하 “계약제임용교원”이라 한다)은 계약제로 임용하며, 직급별 계약기간은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2.7.12.)

제5조(임용계약) ① 계약제임용교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임용한다.

1. 소속
2. 직급
3. 계약기간
4. 급여
5. 교수시간
6. 업적 및 성과
7. 재계약 조건 및 절차
8.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임용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총장은 이미 체결한 임용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의 변경은 할 수 없다.

④ 계약제임용교원의 의무, 복무, 신분보장 등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순천대학교학칙 및 제규정에 따른다.

⑤ 총장은 계약제임용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1. 교원이 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임용시 제출한 각종 증명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개정 2012.10.25.)
4. 임용 전 또는 임용 후 연구실적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설 2012.10.25.)

제6조(교원의 소속) ① 교원은 각자 전공분야별로 전공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은 총장이 관련 단과대학장·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의 동의를 얻어 배정한다. (개정 2012.10.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교양융합대학, 학칙 제2장 제1절 및 제3절에 규정된 관리조직과 부속시설 등에 소속될 수 있다.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단에 소속된다. (신설 2012.10.25., 개정 2019.11.12.)

③ 부속시설 소속으로 신규 채용된 교원은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으로 전보할 수 없다. 교양융합대학, 학칙 제2장 제1절 및 제3절에 규정된 관리조직과 부속시설 등의 소속으로 신규 채용된 교원은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으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12.10.25., 2019.11.12.)

④ 총장은 국책사업 수행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부(과)장(전공주임) 및 당해 교원과 해당학과 교원들의 동의를 얻어 전임교원의 소속을 한시적으로 변경하거나 겸임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변경 및 겸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제7조(연구실적물 인정) ① 교원의 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은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인정범위 및 인정율은 순천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9조의 별표1(이하“별표 1”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월간·일간 등의 잡지 및 대학 등의 신문에 발표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3.01)

1. 전문학술저서, 전문학술번역서 및 기타 도서(신규채용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개정 2007.12.31)
2. 해당 전공분야 전국규모 이상 학술지
3. 예·체능계 및 창작실기분야의 경우 연구·발표·전시·입선 등 (공인기관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기실적 평정기준은 순천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9조의 별표 2(이하 “별표 2”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10.25, 2013.03.01)
4.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교육·연구·봉사 등(공인기관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 평정기준은 순천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9조의 별표 3(이하 “별표 3”이라 한다)에 따른다. (신설 2012.10.25, 개정 2013.03.01)

5. 등록된 특허(동일 내용에 대하여 1개국 특허만 인정함) (신설 2007.12.31)

② 제1항의 연구실적물은 임용 예정 직급의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제16조 제2항 및 제27조 제3항 제3호 적용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이하 등재학술지)의 경우 2배에 해당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이하 등재후보학술지)로, 자연계의 국제저명학술지는 2배에 해당하는 등재학술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교신저자 표기가 없는 논문의 경우 제1저자가 교신저자가 된다. (신설 2007.12.31)

④ 재임용, 재계약,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의 경우(신규임용 제외)등재(후보)학술지 여부 및 피인용(충격)지수 (IF; Impact Factor)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에 발표된 것을 인정한다. 단, 위 기준일 현재 등재(후보)학술지와 국제저명학술지(SCI(E))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논문 발표당시 등재(후보)학술지와 국제저명학술지(SCI(E))는 등재(후보)학술지와 국제저명학술지(SCI(E))로 인정한다. (신설 2007.12.31)

제8조(인사위원회) ① 교원의 임용과 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겸보직임용은 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의한다.

제9조(심사평정) ① 신규채용을 제외한 임용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평정표에 의하여 심사 평정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심사평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되, 정년보장교원임용의 심사평정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 위원회가 한다. 임용에 필요한 심사평정의 종합점수는 평균(총계/심사자수)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3장 신규채용

제10조(신규채용자격) ① 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7.12., 2012.10.25., 2019.11.12.)

1. 박사학위 소지자
2. 예능계 및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창작 실기 분야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 또는 교육경력 4년 이상인 사람. 다만, 실적평정기준이 없는 특수 분야의 신규 채용 시에는 연구 및 교육경력에 대한 평정기준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2.10.25.)
3. (삭제 2007.12.31.)
4. 약학대학 임상분야는 팜디(Pharm. D.) 또는 석사학위(약사면허소지자)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종합병원근무)이 4년 이상인 사람. (신설 2012.10.25.)
5. (삭제 2019.11.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산업체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9.11.12.)

1.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2.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3.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③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교육경력의 인정 및 환산률은 순천대학교교수자격인정심사지침에 의한다.(개정 2012.7.12.)

④ 예·체능계 및 창작실기분야는 연구 및 교육경력을 별표 2의 실기실적평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기실적 100점을 연구경력 1년에 상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⑤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석·박사 학위논문(예·체능계 등은 최종 학위논문)과 최근 4년 이내(학위논문 제외)에 발표된 “300점 이상의 연구실적(주저자(단독, 제1저자, 교신저자) 논문 1편 이상 포함)”을 별표 1의 연구실적 환산인정률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체능계의 실기분야 및 창작실기분야는 연구실적을 별표 2의 실기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기실적은 제3항에 의한 연구 및 교육경력 인정을 위한 실기실적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0.18, 2007.12.31., 2012.10.25., 2019.11.12.)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별표1, 별표2, 별표3에 의한 연구실적으로, 약학대학 임상분야는 별표1에 의한 연구실적으로 각각 150점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5.)

제11조(신규채용방법) ①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채용대상자는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 또는 학문적 업적을 쌓은 권위자이어야 한다. 다만, 총장이 외국인 또는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 및 산업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임용예정분야의 업적이 탁월하고 대학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람은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09.11.9., 2007.12.31., 2012.10.25., 2014.12.24.)

② 총장이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때에는 지원 마감일 20일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9., 개정 2017. 2. 20.)

제12조(공개채용심사절차 등) ① 교원의 공개채용심사는 자격심사, 전공일치심사, 공개발표심사, 연구실적심사, 면접심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개정 2012.10.25)

② 자격심사와 면접심사는 합격·불합격으로 심사하고, 전공일치심사, 공개발표심사, 연구실적심사는 점수화하여 총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면접심사대상자는 최고득점자 2명으로 한다. (개정 2012.10.25)

③ 교원공개채용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별도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공개채용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0.25.)

제13조(교원채용 공정성확보위원회) ① 교원 신규채용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교원채용 공정성확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10.18., 2019.11.12.)

②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단과대학 학장이 추천하는 6인, 교수평의회가 추천하는 2인과 총장이 임명하는 1인의 총 1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6. 26., 2019.11.12., 2019.12.20.)

③ 교원채용 공정성확보위원회는 채용분야 심사에서부터 합격자 결정 때까지 존속한다.(개정 2019.11.12.)

④ 교원채용 공정성확보위원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12.)

제14조(특별채용절차) ① 교원의 특별채용은 학과(부)장의 요청으로 소속 단과대학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단과대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 또는 외국인교수의 특별채용은 산학협력단장 또는 부속시설 등의 장이 요청·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강의를 담당하는 학과(학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2.10.25., 개정 2014.12.24)

③ 특별채용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특정대학 교원 구성비) ① 교원신규채용에 있어서는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학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이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25)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 통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999년 9월 30일 이후 최초로 채용 공고되어 신규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2.10.25)

제16조(신규채용직급) ① 교원의 신규채용직급은 조교수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7.12)

② 공개채용 합격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를 충족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 및 이에 준하는 외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전임교원 경력 4년 이상인 사람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 또는 교육 경력이 다음의 최저자격기준 이상인 사람은 상위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0.18, 2007.12.31, 2009. 11.9, 2012.7.12, 2012.10.25)

1. (삭제 2012.7.12)

2. 부교수 :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 또는 교육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공일치심사에서 인정 받은 학위논문을 제외한 연구실적이 최근 5년간 800점 (자연계는 SCI급 국제저명학술지 600점 이상 포함)이상인 사람은 부교수로 신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적 800점에는 등재학술지급 이상(자연계는 SCI급 국제저명학술지) 교신저자 논문 3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12.31, 개정 2012.10.25)

3. 교수 :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 또는 교육경력이 14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공일치심사에서 인정받은 학위논문을 제외한 연구실적이 최근 5년간 1200점(자연계는 SCI급 국제저명학술지 800점 이상 포함) 이상인 사람은 교수로 신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적 1200점에는 등재학술지급 이상(자연계는 SCI급 국제저명학술지) 교신저자 논문 6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12.31, 개정 2012.10.25)

4. 예·체능계는 제2호 및 제3호에서 교신저자 논문 1편을 별표2의 100점 이상에 해당하는 실기실적으로 대체 가능하다. (신설 2007.12.31, 개정 2012.10.25)

③ 특별채용자의 경우 일반채용에 적용하는 임용직급자격에 준하여 조교수, 부교수 및 교수로 신규 채용할 수 있으며 교수의 직급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16조 제2항에 준하여 순천대학교 정년 보장심사를 따로 받아야 한다. 단, 연구 및 교육경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단과대학장이 직급을 제청하여 학무회 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2.10.25)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 중 산업체경력 20년 이상인 사람은 부교수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제17조(임용연기) 총장은 임용예정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용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제4장 재임용 및 재계약

제18조(재임용 및 재계약 시기) 재직중인교원의 재임용과 계약재임용교원의 재계약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각각 실시한다.

제18조의 2(재계약 횟수) 당해 직급으로의 재계약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신설 2017. 2. 20.)

제19조(재임용 절차 등) ① 재직중인교원의 재임용은 별표1, 별표2, 별표3 중 어느 하나의 연구실적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정 결과를 평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2.10.25)

② 재임용 대상 교원은 제9조의 심사평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5)

③ 재임용 대상 교원의 연구실적 제출은 재계약제 대상 교원에 준한다. (개정 2007.12.31, 2012.10.25)

④ 재임용 절차는 제20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⑤ 공무국외여행(6월 이상의 파견근무·해외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임용은 귀국할 때까지 보류한다. 다만, 재임용 보류기간은 임용기간 만료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재직중인교원이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자동 퇴직된다.

제20조(재계약 절차 등) ① 계약재임용교원의 재계약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정결과를 평가

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2.10.25)

② 재계약 대상교원은 현 임용기간 중에 별표1, 별표2, 별표3 중 어느 하나에서 연구실적점수가 조교수는 300점, 부교수는 400점, 교수는 500점 이상(다만, 2016. 3월 1일 이전 신규 임용자는 각각 200점)을 발표하고, 제9조의 심사평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2.10.25., 2017.2.20.)

③ 재계약 대상 교원은 재임용대상자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별표1, 별표2, 별표3 중 어느 하나의 연구실적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실적물은 심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2012.10.25)

④ 재계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장은 계약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해야 한다.

2. 제1호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총장은 제2호의 심의를 신청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재계약요건을 검토한 후 인사위원회의 재계약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과 재계약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계약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계약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인사위원회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재계약이 거부된 교원이 재계약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재임용교원이 공무국외여행(6월 이상의 파견근무·해외연수를 말한다.)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의 재계약 및 제20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재계약되지 아니한 경우의 자동 퇴직일은 제19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승진임용 및 상위직급임용계약

제21조(승진임용 및 상위직급임용계약시기) 교원의 승진임용과 상위직급임용계약은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각각 실시한다. 다만, 승진임용 또는 상위직급임용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3월 1일과 9월 1일에 승진임용 또는 상위직급임용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4.)

제22조(승진소요기간 등) ①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직급간 승진소요년수 이상을 재직하여야 하며, 승진소요기간 중 1개월 이하의 단기여행을 제외한 해외여행 기간이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삭제 2012.7.12)

2.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 : 4년

3.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 5년

② 4년제 대학 이상에서 당해직급 이상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최초 승진 시 승진소요기간에 합산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승진소요기간 중 2분의 1 이상은 이 대학교에 재직할 경력이어야 한다. (신설 2013.5.31)

③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승진할 수 없다. (개정 2012.10.25)

1. 정직 : 18월
2. 감봉 : 12월
3. 견책 : 6월

④ (삭제 2005.1.27)

제23조(삭제 2007.12.31)

제24조(연구실적물 제출) ①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현 직급 임용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2.10.25.)

1. (삭제 2012.7.12.)
2.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 : 연구실적 점수 500점(저서의 총점은 25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0.25.)
3.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 연구실적 점수 600점(저서의 총점은 3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0.25.)
4. (삭제 2012.10.25.)
5. 학과(전공)에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 보다 강화된 승진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강화된 승진기준의 2배 이상을 조기 달성한 사람은 1년 범위 내에서 승진소요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개정 2012.10.25.)

② (삭제 2007.12.31.)

③ 자연계 중 특정분야 교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인문계 교원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예·체능계 이외 학과 소속 교원 중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창작실기분야의 경우에는 예·체능계 교원의 연구실적물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예·체능계 교원은 제1항의 연구실적을 별표 2에 의한 실기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10.25.)

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제1항의 연구실적을 별표3의 산학협력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일반 교수는 다음과 같은 산학협력 및 교육실적을 연구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구 분	평가 항목	대체 비율
별표3 (산학협력실적)	취업동아리 지도교수	20퍼센트
	창업동아리 및 발명동아리 지도교수	20퍼센트
	국제특허(UP, JP, EP) 등록	100퍼센트
	국내특허 및 기타 국제특허 등록	20퍼센트
별표4 (교육실적)	특성화 전공트랙 개발	100퍼센트
	특성화 교과목 개발 운영	100퍼센트

(신설 2012.1.26.) (개정 2012.10.25., 2013.5.31., 2014.2.11., 2014.4.29.)

⑥ 저서 등 심사를 거치지 않은 연구실적물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실적물심사위원회를, 실기 실적물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실기 실적물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⑦ (삭제 2007.12.31.)

제25조(상위직급 임용계약) ① 계약제임용교원이 제22조 내지 제24조에 규정된 승진요건을 갖춘 때에는 재직중인교원에 준하는 승진심사를 거쳐 상위직급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제임용교원이 상위직급으로 임용 계약할 경우에는 그때부터 계약기간을 재산정 한다.

제25조의 2(재심사) ①승진 임용심사에 탈락한 교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0.)

②총장은 재심사 요청내용이 이유있다고 판단할 경우 10일 이내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0.)

제26조 (삭제 2007.12.31)

제6장 정년보장임용

제27조(정년보장임용) ①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는 교원의 직급은 교수로 하고,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는 교원의 정수는 이 대학교 교원배정 정원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정년보장임용시기는 승진임용시기에 준한다. (개정 2007.12.31., 2012.10.25., 2017. 2. 20.)

②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 대학교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두며,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인사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3. 02. 15)

③ 정년까지 임용되고자 하는 교원은 순천대학교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년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7.12.31, 개정 2009.11.9, 2012.10.25)

1. 교수 승진에 필요한 별표1의 연구실적 점수 + 100점(다만, 2016년 3월 1일 이전 신규 임용자는 600점) 다만, 예·체능계 교원은 별표2에 의한 실기실적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별표3에 의한 산학협력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2017. 2. 20.)

2. (삭제 2012.10.25)

3. (삭제 2012.10.25)

4. (삭제 2012.10.25)

5. (삭제 2012.10.25)

6. (삭제 2012.10.25)

7. (삭제 2012.10.25)

④ 교수 직급으로 신규채용된 교원이 정년보장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 대학교에 4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재직기간 중 별표1, 별표2, 별표3 중 어느 하나의 연구실적 점수가 800점을 초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5)

⑤ 제2항의 심사는 제9조의 심사평정에 의하며, 정년까지 임용될 교수는 이 심사평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⑥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0.25.)

제27조의 2(재심사) 제25조의 2의 규정은 정년보장 심사에도 준용한다. (신설 2017. 2. 20.)

제7장 기타

제28조(교원겸보직기간) 이 대학교 교원의 겸보직 기간은 법령 또는 이 대학교 제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실적평가 및 직위공모 등) ①총장은 보직교원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모절차를 통한 보직자 임명을 할 수 있다. 다만, 학장, 학부장 및 학과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 2. 20.)

②총장은 보직자 임명시 실적주의와 양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0.)

부 칙(2004.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재임용·재계약·승진임용·상위직급임용계약과 관련한 교원업적평가

결과의 반영은 순천대학교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최초의 업적평가 실시 1년후 재임용·재계약·승진임용·상위직급 임용계약하는 자부터 시행하며, 그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적물 평가 및 심사 평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시행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순천대학교전임교원계약재임용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05. 1. 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전임강사로 재직중인 자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신규채용요건을 갖춘 경우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승진소요기간 도달 전에 조교수로 임용계약할 수 있으며, 제2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3. 16.)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재임용 또는 재계약 되는 교원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0.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4조 및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31일 이전 임용자는 개정 전 순천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2008년 4월 1일 기준 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의 경우 개정 전 순천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채용당시의 실적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요건을 갖춘 경우,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기간 도달 전에 승진 임용계약할 수 있으며, 이때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순천대학교 당해직급 재직기간중에 발표된 실적물이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임강사:등재학술지(자연계는 SCI(E)급 국제저명학술지) 제1 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1편

2. 조교수:등재학술지(자연계는 SCI(E)급 국제저명학술지) 교신저자 논문 2편

3. 부교수:등재학술지(자연계는 SCI(E)급 국제저명학술지) 교신저자 논문 3편

⑤ 1997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로서 차기 1회 승진심사시, 개정 전 순천대학교 교원 인사규정에 제시된 연구실적요건을 충족한 경우, 현 직급 임용이후 2007년 1학기 까지의 업적점수는 년 100점(학기당 50점)으로한 누적점수를 부여한다.

⑥(경과조치)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공포 당시 부교수의 경우 개정 전 순천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2조 및 제24조 제1항 제3호를 충족하면 제27조 제3항의 정년보장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2008년 10월 1일 승진대상자: 개정 전 순천대학교 교원 인사규정에 제시된 직급별 연구실적요건 총합에 추가 연구실적점수 100점

2. 2009년 4월 1일 승진대상자: 개정 전 순천대학교 교원 인사규정에 제시된 직급별 연구실적요건

총합에 추가 연구실적점수 150점

3. 2009년 10월 1일 승진대상자: 개정 전 순천대학교 교원 인사규정에 제시된 직급별 연구실적요건 총합에 추가 연구실적점수 220점

4. 2010년 4월 1일 승진대상자: 개정 전 순천대학교 교원 인사규정에 제시된 직급별 연구실적요건 총합에 추가 연구실적점수 300점

5. 2010년 10월 1일 승진대상자: 개정 전 순천대학교 교원 인사규정에 제시된 직급별 연구실적요건 총합에 추가 연구실적점수 400점

6. 2011년 4월 1일 승진대상자: 개정 전 순천대학교 교원 인사규정에 제시된 직급별 연구실적요건 총합에 추가 연구실적점수 520점

7. 다만, 제27조 제3항을 충족한 경우 승진소요기간이 도달하기 전에도 정년보장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경과조치)** 2007년 9월 현재의 직급으로 재임용(계약) 받을 경우 현행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하며 이후의 재임용에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9. 11.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로 보며, 임용기간, 재계약 및 승진임용 심사기준의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하여 반영한다.

1. 조교수 임용기간은 종전의 전임강사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재계약 심사기준의 업적평가점수 및 연구실적물은 종전의 전임강사 임용기간 내의 실적을 포함한다.

3. 승진임용 심사기준의 업적평가점수 및 연구실적물은 2012년 3월 1일부터 발생한 실적으로 한다.

② 이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2012. 10.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원의 재임용·재계약·승진·정년보장 임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4년 4월 1일까지 재임용·재계약·승진·정년보장 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4월 1일까지 부교수·교수 승진 임용은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은 부교수 승진시 400점, 교수 승진시 500점으로 적용한다.

3. 2015년 10월 1일부터 부교수·교수 승진 임용은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임강사 임용기간 내의 연구실적을 부교수·교수 승진시 각각 100점까지 대체 인정한다.

부 칙(2013. 0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3. 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3년 4월 1일까지 전임교원 신규채용·재임용·재계약·승진임용·상위직급임용계약·정년보장 임용심사에 필요한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점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1] (개정 2007.12.31, 2012.10.25) (삭제 2013.03.01)

[별표2] (개정 2007.12.31, 2009.11.9, 2012.10.25) (삭제 2013.03.01)

[별표3] (신설 2012.10.25) (삭제 2013.03.01)

부칙(2013. 5.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2.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4.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신규 국책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3. 30.) (순천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순천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중 “교양기초교육원”을 “교양융합대학”으로 한다.

제3조(모집단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생략>

부 칙(2019. 11.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27.) (순천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순천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심사평정표 중 “교양융합대학”을 “교육혁신본부”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순천대학교 전임교원임용계약서

순천대학교총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이하 “을” 이라 한다)은(는) 전임교원 임용에 따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소속 및 직급) “갑” 은 “을” 을 순천대학교 학부(학과)로 임용한다.

제2조(계약기간) “을” 의 임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급여) “을” 의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을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교수시간) “을” 의 교수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수책임시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업적 및 성과) “갑” 은 순천대학교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하여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 영역이 우수한 경우 “을” 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계약 조건 및 절차) ① “갑” 은 “을” 이 계약기간 만료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여부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한다.

1. 계약기간 중 연구실적점수 200점 이상(순천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7조의 연구실적물)
2. 계약기간 중 순천대학교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의한 심사평정점수가 80점 이상

② 재계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갑”은 “을”에게 계약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해야 한다.
2. 제1호의 통지를 받은 “을”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심의를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갑”은 제2호의 심의를 신청받은 때에는 제1항에 의한 재계약요건을 검토한 후 인사위원회의 재계약심의를 거쳐 “을”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과 재계약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계약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계약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4. 인사위원회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지정된 기일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재계약이 거부된 “을”이 재계약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되지 못한 경우 당연 퇴직된다.

제7조(계약제 전임교원의 의무) ① “을”은 재직 중 교육공무원으로서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에는 갑”의 승인 없이 타교 출강 등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③ “을”은 맡은 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순천대학교 대학 발전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하며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갑”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7조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할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3. 임용시 제출한 각종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물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

4. “을”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제9조(계약조건의 변경) 계약조건을 변경할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① “을”은 계약기간 중 순천대학교 교원과 동등한 신분상의 권리를 갖는다.

②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 공무원복무규정 및 순천대학교교원인사규정 등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제 규정을 보충 적용한다.

③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순천대학교 총장 _____(인)

(을) 성 명 _____(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7.12.31., 2013.02.15., 2018.03.03., 2020.02.27.)

(재임용/재계약/승진임용/상위직급임용계약/정년보장임용)

심 사 평 정 표

심사연월일 년 월 일

1. 심사대상자

성명		직명	
소속			

2. 심사자

성명		(인)	직명
소속			

3. 평정내용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평가 점수
기본 자질	인격 및 품위	교원으로서의 일반적 품위와 자질 등 • 우수 : 10점, 보통 : 8점, 미흡 : 6점	10	
	근무 상황	근무태도와 출·퇴근 시간의 준수 여부 등 • 우수 : 10점, 보통 : 8점, 미흡 : 6점	10	
교육	수업책임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책임시수 초과 시간이 2시간 이상 : 15점 • 평균 책임시수 초과 시간이 1시간 : 14점 • 평균 책임시수 달성 : 13점 • 평균 책임시수 미달 시간이 1시간 : 11점 • 평균 책임시수 미달 시간이 2시간 : 10점 • 평균 책임시수 미달 시간이 3시간 : 9점 • 평균 책임시수 미달 시간이 4시간 이상 : 8점 	15	
	강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90점 이상 : 15점 • 평균 85점 이상 90점 미만 : 14점 • 평균 80점 이상 85점 미만 : 13점 • 평균 75점 이상 80점 미만 : 12점 • 평균 70점 미만 : 11점 	15	
	강의개선노력	교육혁신본부 교수법, 강의향상, 교재개발 프로그램 등의 참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기간 중 2회 참석 : 5점 • 평가 기간 중 1회 참석 : 4점 • 없을 시 : 3점 	5	
연구	연구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적물이 기준량의 200% 이상 : 35점 • 연구실적물이 기준량의 150% 이상 200% 미만 : 33점 • 연구실적물이 기준량의 150% 미만 : 31점 • 연구실적물이 기준량만 달성 : 29점 	35	
봉사	봉사활동	학과, 대학, 지역 발전을 위한 유무형의 활동에 적극 참여 여부 등(업적평가의 봉사점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50점 : 10점 • 평균 40점 이상 50점미만 : 9점 • 평균 30점 이상 40점미만 : 8점 • 평균 20점 이상 30점미만 : 7점 • 평균 20점 미만 : 6점 	10	
합 계			100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07.12.31)

정년보장 심사 신청서

1. 신청자

성명		직명	
소속			

2. 자체평가 내용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자체평가
1) 연구능력	연구실적 (대표 논문의 질적 수준)	
2) 교육	수업 (담당수업시간 준수 및 무단 휴·결강이나 합반 등 기본 사항 준수 여부 등)	
	학생반응 (학과 학생들의 교육효과 등)	
	학생지도 (학생들의 실험 또는 진로 지도에 대한 적극성 등)	
3) 품위 및 자질	인격 및 품위 (교원으로서 일반적 품위와 자질 등)	
	봉사 및 참여 (학과 발전을 위한 유무형의 활동에 적극적 참여 여부 등)	
4) 근무상황	근무상황 (주당 근무일수와 출퇴근 시간의 일반적 준수 여부 등)	

※ 각 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평가를 해 주십시오.

예시) 논문 : ~학회 우수논문, IF ~에 해당됨 등

인격 및 품위 : 징계 등

학생지도 : 년 10회에 걸쳐 상담, ~학생을 ~에 취업시킨바 있음 등

근무 상황 : 주당 학부강의 3일, 각종 연구활동 및 봉사활동을 위한 출장 2일 등